



2009 세금절약 가이드(1)

이번호부터는, 2009년 4월 국세청에서 일반국민들이 세법에 대한 지식을 넓혀 합법적으로 세금을 절약할 수 있는 방법과 불이익을 방지할 수 있는 유의사항들을 한 대 모아서 알기 쉽게 하기 위해 발간한, 「2009 세금절약 가이드」를 연재하고자 합니다.

I. 세금에 관한 일반상식

1. 절세와 탈세는 어떻게 다른가?

세금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그 재정수요에 충당하기 위하여 개별적인 보상없이 국민으로부터 강제적으로 징수하는 것이다. 따라서 세금을 징수당하는 국민의 입장에서 보면 가능한 한 세금을 적게 내거나 좀 더 줄여서 내고 싶은 것이 모든 사람들의 솔직한 심정일 것이다. 그렇다고 무조건 적게 낼 수는 없는 노릇이다. 왜냐하면 국민으로서 마땅히 지켜야 할 법을 위반하게 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절세와 탈세는 모두 납세자가 자기의 세금부담을 줄이고자 하는 목적으로 행해진다는 점에서는 같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그 방법이 세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 있을 때는 “절세”라고 할 수 있으나, 사기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세금부담을 줄이는 것은 “탈세”로서 조세범 처벌법에 의하여 처벌을 받게 된다.

□ 절세(Tax Saving)

“절세”란 세법이 인정하는 범위 내에서 합법적 합리적으로 세금을 줄이는 행위를 말한다.

절세에 특별한 비결이 있는 것은 아니며, 세법을 충분히 이해하고 법 테두리 안에서 세금을 줄일 수 있는 가장 유리한 방법을 찾는 것이 절세의 지름길이다. 사업과 관련된 세금을 절세하려면,

- 소득증빙자료를 철저히 수집하고 장부정리를 꼼꼼하게 하여 안내도 될 세금은 최대한 내지 않도록 하고,
- 세법에서 인정하고 있는 각종 소득공제 세액공제 준비금 충당금 등의 조세지원 제도를 충분히 활용하며,
- 세법이 정하고 있는 각종 의무사항을 성실히 이행함으로써 매입세액 불공제나 가산세 등의 불이익 처분을 받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 탈세(Tax Evasion)

“탈세”란 고의로 사실을 왜곡하는 등의 불법적인 방법을 동원해서 세금 부담을 줄이려는 행위를 말한다. 탈세의 유형은 여러 가지가 있으나 그 중 대표적인 것을 살펴보면,

- 수입금액 누락
- 실물거래가 없는데도 비용을 지출한 것으로 처리하는 가공경비 계상
- 실제보다 비용을 부풀려 처리하는 비용의 과대계상
- 허위계약서 작성
- 명의위장
- 공문서 위조 등이 있다.



탈세행위는 국가재정을 축내는 행위이기도 하지만, 더욱더 중요한 것은 탈세로 축낸 세금은 결국 다른 사람이 부담해야 하기 때문에 성실한 납세자가 피해를 볼 수도 있다는 점이다. 따라서 정부에서는 생활영수증보상금제 실시, 신용카드가맹점 확대, 주류구매전용카드제 시행, 입장권전산발매시스템 및 「과세자료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도입 등으로 과세근거를 자동적으로 포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부가가치세 과세특례제도 폐지, 금융소득종합과세 재실시, 실지거래가액에 의한 양도소득세 과세 행위를 근절시키기 위한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 조세회피(Tax Avoidance)

“조세회피”란 세법이 예상하는 거래형식을 따르지 아니하고 우회행위 등 이상한 거래형식을 취하여 통상의 거래형식을 취한 경우와 동일한 효과를 거두면서 세금부담을 줄이는 것을 말한다. 조세회피는 사회적 비난의 대상은 될 수 있으나 세법상 처벌대상이 되지는 아니한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 개정되기 전의 전환사채를 이용하여 사실상 주식을 증여하는 행위 또는 비상장주식을 증여한 후에 상장하여 시세차익을 얻게하는 행위 등이 ‘조세 회피’에 해당된다. 정부에서는 문제가 있을 때마다 세법을 개정하여 조세회피를 방지하는 규정을 새로 만들지만 「소급과세금지」 규정 때문에 이미 지나간 사안에 대하여는 과세를 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절세가 합법적인 조세절약 행위라고 한다면 조세회피 행위는 합법적인 탈세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정부에서는 자본거래에 대한 포괄적 과세 제도를 도입하는 등 조세회피 행위를 방지하고 공평과세를 실현하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2. 탈세를 하면 어떤 처벌을 받게 되나?

□ 세법규정

조세범처벌법에서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써 조세를 포탈하거나 조세의 환급 공제를 받은 자는 다음과 같이 처벌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개별소비세 또는 주세를 포탈한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포탈 세액이나 환급 공제받은 세액의 5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한다.
- 인지세의 경우에는 중서 장부 1개마다 포탈세액의 5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 또는 과료에 처한다.
- 기타의 국세의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포탈한 세액이나 환급 공제받은 세액의 3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한다.

3. 억울한 세금! 어떻게 구제 받을 수 있나?

사업을 하다 보면 세금과 관련하여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하여 억울하다고 생각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 이런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제도를 이용하여 불복을 청구함으로써 침해된 권리를 구제받을 수 있다.

□ 행정에 의한 권리구제 제도

● 납세자보호담당관제도

- ‘납세자보호담당관제도’는 세금과 관련된 모든 고충을 납세자의 편에 서서 적극적으로 처리해 줌으로써 납세자의 권익을 실질적으로 보호하기 위해 도입한 제도로, 이를 위해 전국의 모든 세무관서에는 납세자보호 담당관이 설치되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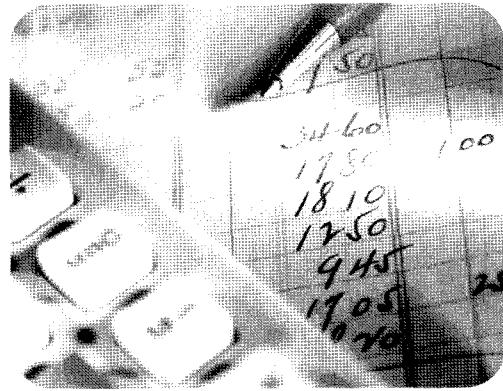
납세자는 국세청에서 담당하는 모든 세금과 관련된 애로 및 불편사항에 대하여 고충을 청구할 수 있는데, 예를 들면 다음과 같은 경우가 고충 청구 대상이다.

- 세금구제 절차를 알지 못하여 불복청구 기간이 지났거나, 입증 자료를 내지 못하여 세금을 물게 된 경우
- 실제로는 국내에 한 채의 주택을 갖고 3년 이상 소유한 후 팔았으나 여러 가지 사유로 공부상 기재 내용과 같지 아니하여 1세대 1주택 비과세 혜택을 받지 못한 경우
- 사실상 자신의 자금으로 부동산을 취득하였으나 취득자금을 서류상으로 명백하게 입증하기 어려운 경우
- 체납세액에 비하여 너무 많은 재산을 압류하였거나 다른 재산이 있음에도 사업활동에 지장을 주는 재산을 압류한 경우
- 세무조사과정에서 과도한 자료요구 등 세무조사와 관련하여 애로 불만사항이 있는 경우 등

고충청구는 형식에 제한이 없으며, 납세자의 고충이 접수되면 납세자 보호담당관이 끝까지 책임지고 성의껏 처리해 주고 있다. 그러므로 국세와 관련된 애로사항이나 고충이 있으면 가까운 세무서의 납세

자보호담당관에게 상담해 보는 것이 좋다.

집이나 사업장에서 일반 유선전화로 1577-0070을 누르면 관할 세무서납세자보호담당관과 연결되어 친절한 상담을 받을 수 있다.



□ 법에 의한 권리구제 제도

1) 고지 전에는 고세전적부심사제도를 이용할 수 있다.

'과세전적부심사제도'는 세무조사(업무감사 및 세무조사 파생자료의 처리 포함) 후 과세할 내용을 미리 납세자에게 알려 준 다음 납세자가 그 내용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때 과세예고의 옳고 그름에 대한 심사를 청구하게 하고, 심사결과 납세자의 주장이 타당하면 세금을 고지하기 전에 자체적으로 시정하여 주는 제도이다.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하려면 세무조사결과통지서 또는 과세예고통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통지서를 보낸 당해 세무서장 지방국세청장에게 청구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쟁점사항이 법령해석사항 및 국세청장의 감사지적사항에 대하여는 국세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그 외 청구세액이 10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국세청장에게 제출할 수 있다. 그러면 세무서장 등은 이를 심사하여 30일 이내에 31쪽의 심사청구 결정절차와 같이 국세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을 한 후 납세자에게 그 결과를 통지하여 준다. 한편, 과세전적부심사청구를 원하지 않는 납세자는 다음과 같은 「조기결정신청제도」를 이용할 수 있다.

※ 조기결정신청제도 : 세무조사결과통지나 과세예고통지시 납세자 선택에 의거 조기결정(부과)을 신청할 수 있는 제도로서 「조기결정신청서」를 제출하면 과세전적부심사 청구기간내에도 즉시 고지를 받게 되어 가산세 부담 경감 및 조사가 조기 마무리되는 효과가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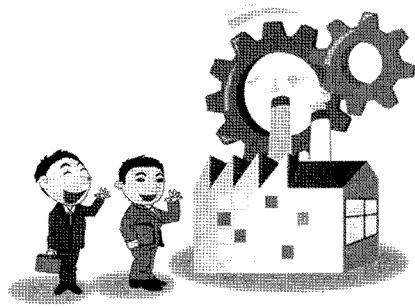
2) 고지 후에는 다음과 같은 제도를 이용할 수 있다.

세금이 고지된 후에는 다음과 같은 권리구제 제도를 이용할 수 있다.

- 세무서 또는 지방국세청에 제기하는 '이의신청'
- 국세청에 제기하는 '심사청구'
- 국무총리실 조세심판원에 제기하는 '심판청구'
- 감사원에 제기하는 '감사원 심사청구'
- 행정소송법에 의하여 법원에 제기하는 '행정소송'

위와 같은 권리구제 절차를 밟고자 하는 경우에는 1단계로 이의신청 심사청구 심판청구 감사원 심사청구 중 하나의 방법을 선택하여 청구할 수 있으며, 1단계 절차에서 구제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2단계로 법

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다만, 이의신청을 한 경우에는 심사 또는 심판청구를 거쳐야 합니다) 또한 세금이 고지된 이후의 구제절차는 반드시 고지서 등을 받은 날 또는 세금부과 사실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서류를 제출해야 하며, 1단계 절차에서 권리구제를 받지 못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결정통지서를 받은 날 또는 결정의 통지를 받기 전이라도 그 결정기간이 지난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만약 이 기간을 지나서 서류를 제출하면 아무리 청구이유가 타당하더라도 “각하” 결정을 하므로 청구기간은 반드시 지켜야 한다.



3) 불복심리시「심리자료 사전열람」제도를 도입하여 납세자 권리보호를 확대하였다.

과세관청 또는 납세자 중 어느 한 쪽에 유리하게 불복사건을 심리한다는 의구심을 불식시키고 심리절차를 보다 공정 투명하게 운영하기 위해「심리자료 사전열람」절차를 운영하고 있다.

4. 세금을 제때 못 내면 어떤 불이익을 받게 되나?

□ 가산세 및 가산금 부과

납부기한이 지나도록 세금을 내지 않거나 내야 할 세금보다 적게 낸 경우에는 가산세, 즉 납부불성실 가산세를 추가로 내야 한다. 납부불성실가산세는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에 납부기한의 다음날로부터 자진납부일 또는 고지일까지의 기간에 1일 1만분의 3의 율(1년 10.95%)을 적용하여 계산한다.

납세자가 납세고지서를 받고도 세금을 납부하지 않으면 체납된 국세에 3%의 가산금이 부과되며, 체납된 국세가 100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매 1개월이 지날 때마다 1.2%의 증가산금이 5년 동안 부과된다. 따라서 100만원 이상의 국세를 체납한 경우에는 최고 75%까지 가산금이 붙을 수 있다.

□ 체납처분

세금을 체납하게 되면 세무서에서는 체납세액을 징수하기 위하여 체납자의 재산을 압류하며, 그래도 계속하여 세금을 내지 않으면 압류한 재산을 매각하여 그 대금으로 체납세금을 충당한다.

□ 행정규제

세금을 체납하게 되면 다음과 같은 제재조치를 받을 수도 있다.

1) 허가사업의 제한

허가 · 인가 · 면허 등을 받아 사업을 경영하는 자가 500만원 이상의 국세를 3회 이상 체납한 때에는 허가관서에 사업의 정지 또는 허가의 취소를 요구할 수 있다.

2) 출국규제

국세를 5,000만원 이상 체납한 자로서 소유재산으로 채권확보를 할 수 없고, 재산을 은너하여 해외로 도피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관계부처에 출국금지를 요구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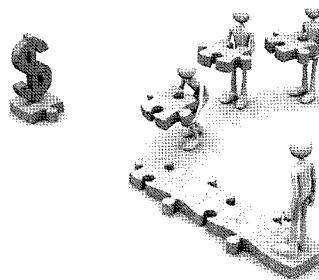
3) 체납 또는 결손처분 자료의 신용정보기관 제공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세무서장은 신용정보기관(전국은행연합회)에 자료를 제공하며, 자료가 제공되면 신용불량정보로 등록되어 신규대출의 중단, 신용카드 발급 제한 등 각종 금융제재를 받을 수 있다.

- 국세체납액이 500만원 이상인 자로서

- 체납발생일로부터 1년 이상이 경과하였거나
- 1년에 3회 이상 체납한 경우

- 결손처분액이 500만원 이상인 경우



4) 고액 상습체납자 명단 공개

- 국세체납액이 10억원 이상인 자로서

- 체납발생일로부터 2년 이상 경과한 경우

5. 정부에서 세금을 부과할 수 있는 기간은?

세법에서는 일정한 기간 안에서만 세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그 기간이 지나면 세금을 부과할 수 없도록 하고 있는데, 이를 “국세부과의 제척기간”이라 한다.

일반적으로 국민들은 국세부과의 제척기간이 5년이라고 알고 있으나 이를 무조건 5년이라고 생각하면 큰 오산이다. 제척기간이 최장 15년까지 있기 때문이다. 국세부과의 제척기간은 다음과 같다.

일반적인 경우

1) 상속세와 증여세

-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신고기한의 다음날부터 15년간
 - 납세자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써 상속세 또는 증여세를 포탈하거나 환급 · 공제 받는 경우
 - 상속세 또는 증여세를 신고하지 아니하였거나 허위신고 또는 누락신고한 경우
- 기타의 경우에는 상속세 또는 증여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간

2) 상속세 및 증여세 이외의 세금

-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써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 또는 공제받는 경우에는 신고기한의 다음날부터 10년간
- 납세자가 법정신고한 내에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신고기한의 다음날부터 7년간
- 기타의 경우에는 신고기한의 다음날부터 5년간

□ 특수한 경우

1) 고액 상속 · 증여재산

납세자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 상속세 또는 증여세를 포탈하는 경우로서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의 규정에 불구하고 당해 재산의 상속 또는 증여가 있는 것을 과세관청이 안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상속세 또는 증여세를 부과할 수 있다. 다만, 상속인이나 증여자 및 수증자가 사망한 경우와 포탈세액 산출의 기준이 되는 재산가액이 50억원 이하인 경우에는 일반적인 제척기간에 의한다.

- 제3자의 명의로 되어 있는 피상속인 또는 증여자의 재산을 상속인 또는 수증자가 보유하고 있거나 자신의 명의로 실명전환을 한 경우
- 계약에 의하여 피상속인이 취득할 재산이 계약이행기간 중에 상속이 개시됨으로써 등기 · 등록 또는 명의개서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여 상속인이 취득한 경우
- 국외에 소재하는 상속 또는 증여 재산을 상속인 또는 수증자가 취득한 경우
- 등기 등록 또는 명의개서가 필요하지 아니한 유가증권 서화 골동품 등 상속 또는 증여 재산을 상속인 또는 수증자가 취득한 경우

2) 조세쟁송의 경우

이의신청 · 심사청구 · 심판청구 · 감사원법에 의한 심사청구 또는 행정 소송법에 의한 소송을 제기한 경우에는 일반적인 제척기간이 경과하였더라도 그 결정 또는 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1년이 경과하기 전까지는 당해 결정 또는 판결에 따라 경정결정을 하거나 기타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3) 5년을 초과하여 이월결손금 공제를 받는 경우

해당 결손금이 발생한 과세기간의 소득세 또는 법인세는 이월결손금을 공제한 과세기간의 법정신고 기한으로부터 1년간

6. 세금을 징수 할 수 있는 시기도 일정한 기간이 있다.

국가에서 세금을 고지하였으나 납세자에게 재산이 없는 등의 사유로 세금을 징수할 수 없어 체납세로 남아 있는 경우가 있다. 이 때 국가가 독촉 · 납부최고 · 교부청구 등 세금을 징수하기 위한 조치를 일정 기간 동안 취하지 않으면 세금을 징수할 수 있는 권리가 소멸하게 되는데, 이를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 완성’이라 한다.

국세징수권은 이를 행사할 수 있는 때로부터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된다.

□ 소멸시효의 기산일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는 다음의 날부터 기산한다.

- ① 과세표준과 세액의 신고에 의하여 납세의무가 확정되는 국세(소득세, 법인세, 부가가치세, 개

별소비세, 주세, 증권거래세, 교육세)에 있어서 신고는 하였으나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의 경우

– 법정신고 기한의 다음날

② 위 ①의 국세로서 무신고 또는 과소신고한 부분의 세액 및 과세표준과세액을 정부가 결정함으로써 납세의무가 확정되는 국세(상속세 및 증여세)의 경우
– 납세고지에 의한 납부기한의 다음날

③ 원천징수의무자 또는 납세조합으로부터 징수하는 국세의 경우 납세고지한 원천징수세액 또는 납세조합 징수세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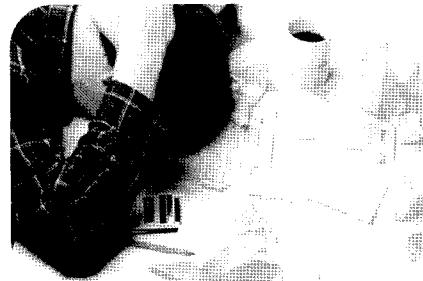
– 납세고지에 의한 납부기한의 다음날

④ 인지세의 경우 납세고지한 인지세액

– 납세고지에 의한 납부기한의 다음날

⑤ 법정신고납부기한이 연장되는 경우

– 연장된 기한의 다음날



□ 시효의 중단

하지만 세무서에서 중간에 납세의 고지 8독촉 납부최고 8교부청구 및 암류 등의 조치를 취한 경우에는 그때까지 진행되어 온 시효기간은 효력을 잃는다. 따라서 이 경우에는 고지 8독촉 납부최고에 의한 납부기간, 교부청구 중의 기간, 암류해제까지의 기간이 경과한 때로부터 새로이 5년이 경과해야 소멸시효가 완성된다.

□ 시효의 정지

또한 시효의 진행 중에 징수유예기간 분납기간 연부연납기간 체납 처분유예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만큼 시효의 진행이 일시 정지되며, 정지사유가 종료된 후 나머지 기간의 진행으로 그 전에 지나간 기간과 통산하여 5년이 경과하면 시효가 완성된다.

▶ 다음호에 계속